의안번호	제650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8월 2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50

제출연월일 : 2024년 8월 23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추진과 청소년종합진흥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을 상근으로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원장 임용 체제를 ‘비상근’에서 ‘상근’으로 변경(안 제8조)

○ 원장 보수지급 기준 명시(안 제13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비상근”을 “상근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호 단서 중 “비상근”을 “상근”으로, “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를 “보수를 지급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원장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임용) ①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상담·지도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비상근으로 한다.	제8조(임용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 상근----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보수) 진흥원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	제13조(보수) ----------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보수지급 기준 :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활동진흥센터,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상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비상근 원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	2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 상근 -- ---------- ---- 보수를 지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청소년기본법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40조(예산의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의 임용체계를 ‘비상근’에서 ‘상근’으로 변경하고 원장의 보수 기준을 정비함

-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추진과 청소년종합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상근 원장 보수 등 비용

- 기본연봉 + 제수당(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 등)
- 타시도, 도 출자출연기관중 성격·규모 등을 고려, 합리적수준 결정

3. 관련조문

○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(보수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충청북도 출자·출연기관 대표자 연봉 평균 등 토대로 추계

나. 추계 결과

○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

- 82,680천원(연봉 75,000천원, 수당 7,680천원) / 연간
- 344,500천원(연봉 312,500천원, 수당 32,000천원) / 5년간(24년~28년)

다. 재원조달방안

○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
세 입	344,500	13,780	82,680	82,680	82,680	82,680
도 비	344,500	13,780	82,680	82,680	82,680	82,680
세 출	344,500	13,780	82,680	82,680	82,680	82,680
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	344,500	13,780	82,680	82,680	82,680	82,680

6. 작성자 :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